

검단호수공원역 풍경채 어바니티Ⅱ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489-16 (검단신도시 AB21-2BL)
- 공급대상 : 59~85㎡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918세대 중 추가모집 특별공급 365세대)
- 시 행 사 : (주)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제일건설(주)

1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당사는 홈페이지(<https://www.jeil-gd6.co.kr>)를 운영합니다. 임차인 모집 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청약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청약접수는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신청자는 공식 홈페이지 내 '청약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주체가 지정한 전자접수시스템(유니피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방문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2인 세어형은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하여 홍보운영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접수하여야 하며, 정보취약계층은 홍보운영관에서 청약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당사는 검단호수공원역 풍경채 어바니티Ⅱ 공동주택 918세대 중 특별공급 365세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당사는 견본주택을 건립하지 않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www.jeil-gd6.co.kr) 운영할 예정 입니다.
- 당사는 임차보증금 납부를 위한 임차인 대출 지원 및 연계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임차인 본인이 사전에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호수공원역 풍경채 어바니티Ⅱ는 상담 전화(☎1522-1014)를 통해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주)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사업주체" 또는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입주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귀속됩니다.
- **본 주택의 임대무기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매각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26.10.30.(금)]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일[2026.10.30.(금)]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p>가. 특별공급 대상자</p> <p>① 청년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p> <p>※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p>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10.30.(금)]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명시된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입니다.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차인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10.30.(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요시에 사업주체는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을 준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소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 요건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365세대)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소득, 자산, 나이, 혼인 합산 기간 등의 일부)을 완화하여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당사 홈페이지(www.jeil-gd6.co.kr)에서 평면, 배치도, 공급안내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www.jeil-gd6.co.kr) 내 '청약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주체가 지정한 전자접수시스템(유니피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 당일 당사 홍보운영관을 방문하실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단 청년2인 세어형은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하여 홍보운영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운영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모집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추첨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단, 2인 세어형의 경우 홍보운영관에서 추첨하여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매각전환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 임차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 징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체결 시 공동명의 및 계약체결 후 계약자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본 주택은 타입과 관계없이 세대당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특별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의무 발생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주택과 4738호(2026.10.22.(목))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수리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489-16 일원(검단신도시 AB21-2BL)

■ 금회공급대상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9개동 918세대 중 특별공급 365세대

■ 입주예정 : 2027년 05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실))

주택 관리번호	타입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특별공급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단일평형	세대구분형		2인세어형		
								신혼부부	신혼&청년	청년		청년
2026500041	59A-1	33.7518	11.3685	45.1203	25.0213	70.1416				48	(48)	48(96)
	59A-2	26.2265	8.8338	35.0603	19.4425	54.5028					(48)	
	59B	59.9783	20.3006	80.2789	44.4638	124.7427	3					3(3)
	59C	59.8766	20.0167	79.8933	44.3885	124.2818	87					87(87)
	59D	59.9974	20.6874	80.6848	44.4780	125.1628	54					54(54)
	59E	59.7893	20.2800	80.0693	44.3238	124.3931	39					39(39)
	69B-1	47.2370	15.5477	62.7847	35.0182	97.8029		109	(10)			109(119)
	69B-2	22.7540	7.4894	30.2434	16.8682	47.1116				(109)		
	84A-1	46.3327	15.0012	61.3339	34.3478	95.6817				25	(25)	25(50)
	84-A2	38.6647	12.5185	51.1832	28.6634	79.8466					(25)	
합 계							183(183)	109(119)		73(146)		365(448)

※ 실시설계 등으로 계약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59A-1,59A-2/59B/59C/59D/59E/69B-1/69B-2/84A-1,84A-2)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2인 세어형은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하며, 홍보운영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도 불가 /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

- [임차인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별 타입 표기안내

공고상 전용면적(㎡)	59.9783	59.9783	59.8766	59.9974	59.7893	69.9910		84.9974
						47.2370	22.7540	
단일평형	청년특별공급 (세어형)	신혼특별공급 (단일평형)	신혼특별공급 (단일평형)	신혼특별공급 (단일평형)	신혼특별공급 (단일평형)	신혼&청년 특별공급 (세대구분)	청년특별공급 (세대구분)	청년특별공급 (세어형)
타입표기 방식	59A-1,2	59B	59C	59D	59E	69B-1	69B-2	84A-1,2

-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공급유형에 따라 타입표기 방식이 상이하며, 해당 타입은 당사 **홈페이지(www.jeil-gd6.co.kr)** 등에서 도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세어형 침실별 면적 안내 (단위: ㎡)

공급대상	타입	침실별 전용면적(㎡) / 인허가도서 기준	
		A-1 (침실1,공용부)	A-2 (침실2,3,공용부)
청년 특별공급 (청년 세어형)	59A-1,2	33.7518	26.2265
	84A-1,2	46.3327	38.6647

▣ 세대 구분형 침실별 면적 안내 (단위: ㎡)

공급대상	타입	침실별 전용면적(㎡) / 인허가도서 기준	
		69B-1 (신혼,청년)	69B-2(청년)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세대 구분형)	69B-1,2	47.2370	22.7540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매각전환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표준형 기준) (단위: 원)

구분	타입 (전용면적)	공급대상 (공급형태)	동호별	공급 세대수	공급 실수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월 임대료(원) (전층)
						총액(원)	계약금(원) (10%)	잔금(원)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특별공급	59B	신혼 (단일평형)	5803동, 5809동	3	3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59C	신혼 (단일평형)	5801동, 5802동, 5803동, 5804동, 5809동	87	87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59D	신혼 (단일평형)	5807동, 5808동, 5809동	54	54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59E	신혼 (단일평형)	5807동, 5808동	39	39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69B-1	신혼,청년 (구분형)	5805동, 5806동, 5807동, 5808동	109	10	108,000,000	10,800,000	97,200,000	64,000
	69B-2	청년 (구분형)			109	52,000,000	5,200,000	46,800,000	30,000
	59A-1	청년 (세어형)			48	74,000,000	7,400,000	66,600,000	15,000
	59A-2	청년 (세어형)	5803동	48	48	56,000,000	5,600,000	50,400,000	19,000
	84A-1	청년 (세어형)	5806동	25	25	78,000,000	7,800,000	70,200,000	81,000
	84A-2	청년 (세어형)			25	72,000,000	7,200,000	64,800,000	40,000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타입에 따른 총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임대보증금 총액과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2년 단위로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 상승률(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 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선택한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총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선택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타입	공급 유형	공급 세대수	공급 실수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총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총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59B	신혼부부 특별공급 (단일평형)	3	3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100,000,000	10,000,000	90,000,000	274,000	70,000,000	7,000,000	63,000,000	409,000
59C	신혼부부 특별공급 (단일평형)	87	87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100,000,000	10,000,000	90,000,000	274,000	70,000,000	7,000,000	63,000,000	409,000
59D	신혼부부 특별공급 (단일평형)	54	54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100,000,000	10,000,000	90,000,000	274,000	70,000,000	7,000,000	63,000,000	409,000
59E	신혼부부 특별공급 (단일평형)	39	39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49,000	100,000,000	10,000,000	90,000,000	274,000	70,000,000	7,000,000	63,000,000	409,000
69B-1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세대구분형)	109	10	108,000,000	10,800,000	97,200,000	64,000	82,000,000	8,200,000	73,800,000	176,000	60,000,000	6,000,000	54,000,000	272,000
69B-2	청년 특별공급 (세대구분형)		109	52,000,000	5,200,000	46,800,000	30,000	30,000,000	3,000,000	27,000,000	126,000	20,000,000	2,000,000	18,000,000	169,000
59A-1	청년 (세어형)	48	48	74,000,000	7,400,000	66,600,000	15,000	51,000,000	5,100,000	45,900,000	119,000	37,000,000	3,700,000	33,300,000	182,000
59A-2	청년 (세어형)		48	56,000,000	5,600,000	50,400,000	19,000	40,000,000	4,000,000	36,000,000	91,000	28,000,000	2,800,000	25,200,000	145,000
84A-1	청년 (세어형)	25	25	78,000,000	7,800,000	70,200,000	81,000	55,000,000	5,500,000	49,500,000	175,000	40,000,000	4,000,000	36,000,000	237,000
84A-2	청년 (세어형)		25	72,000,000	7,200,000	64,800,000	40,000	50,000,000	5,000,000	45,000,000	129,000	35,000,000	3,500,000	31,500,000	191,000

4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공통)

-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10.30.(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유형별로 정한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모집안내(청년, 신혼부부)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모집공고일[2026.10.30.(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함)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모집공고일[2026.10.30.(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임차인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5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신청이 타입별 총 공급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순위	비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2순위	100% 초과 110% 이하	3,813,364원~ 4,194,699원	5,866,271원~ 6,452,897원	8,168,430원~ 8,985,272원	8,802,203원~ 9,682,422원	9,326,986원~ 10,259,684원	9,906,264원~ 10,896,889원	10,485,542원~ 11,534,095원	11,064,820원~ 12,171,301원
3순위	110% 초과 120% 이하	4,194,700원~ 4,576,036원	6,452,898원~ 7,039,524원	8,985,273원~ 9,802,115원	9,682,423원~ 10,562,642원	10,259,685원~ 11,192,382원	10,896,890원~ 11,887,516원	11,534,096원~ 12,582,649원	12,171,302원~ 13,277,78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임차인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단,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

※ (월평균소득 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추첨(유니피커)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2인세어형의 경우 홍보운영관에서 추첨하여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입주개시일까지 임차인 자격요건의 완화가 되지 아니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임차인 자격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임차인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타입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www.jeil-gd6.co.kr)에 공고합니다. (단, 2인 세어형의 경우 별도 개별고지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신청 시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은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이므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임대 유형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년(세대분리형)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www.jeil-gd6.co.kr) 내 '청약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주체가 지정한 전자접수시스템(유니피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2인 세어형세대는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하며, 홍보운영관 현장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무주택 판정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5

공급일정

▣ 청약접수 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계약일자
특별공급	2026.11.02.(월) ~ 2026.11.03.(화) (09:00~17:30)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www.jeil-gd6.co.kr) [청약접수] 버튼 클릭	2026.11.04.(수) (16:00)	2026.11.19.(목) ~ 2026.11.21.(토) (10:00 ~ 17:00)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신청 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www.jeil-gd6.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당사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www.jeil-gd6.co.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장소
특별공급	2026.11.04.(수) 16:00	사업주체 공식 홈페이지(www.jeil-gd6.co.kr)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6.11.06.(금) ~ 2026.11.10.(화) (10:00 ~ 17:00)	당사 홍보운영관 - 주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1006-13 (메트로시티2차, 2층) 검단 호수공원역 풍경채 어바니티프 홍보운영관
당첨자 계약체결	2026.11.19.(목) ~ 2026.11.21.(토) (10:00 ~ 17:00)	

※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서류접수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및 필요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유형별	공통서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홍보운영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제출)

특별공급 유형별	공통서류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제출
				○	2.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홍보운영관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3.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 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차인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번호/출산예정일/의사면허 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청년		○		1.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제출
				○	2.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	3.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소득이 없는 세대원
			○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	혼인	○		1.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제출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서류	본인	· 서약서(홍보운영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위임장	대리인	· 홍보운영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10.30.(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운영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일반근로자 (계속적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원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원본), 해당 직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 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원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원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홈택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본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소득(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법인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사업소득(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근로자인 경우 : 위 해당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홈택스)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홍보운영관에 비치)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년도 1월 1일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세무서(홈택스) - 해당직장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또는 확인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근로자 해당 소득 서류	- 관할구역 고용센터 -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들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계약금 납부안내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임대보증금(계약금)	우리은행	1005-604-632917	주식회사 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임대보증금(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계약자 동호수 (예:5804-101)	-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임대차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앞에 세자리는 빼고 기입_580삭제후 기입) (예: 5804동 101호 홍길동 → 40101홍길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운영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7.89%)**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 임차인 사전점검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2개월 전에 임차인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사전방문 시 계약자 외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7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6-704-0070000호	일백사십칠억구천이백만원정 (₩14,792,000,000)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사업 양수권자에게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사업 양수권자】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임대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등을 말합니다. 이하 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8.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임대사업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장래 임대임대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우선 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의 확정분양계약 등에 따른 분양대금(또는 매매예약금)은 HUG의 보증대상이 아니며 HUG는 임차인모집공고상의 임대보증금만을 약관에 따라 보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임주·관리 등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주)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주)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위탁하였으며 이에 자산보관신탁 등기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실 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jeil-gd6.co.kr)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운영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임차인이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이백만원을 위약금(평형, 타입 무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오백만원 한도)을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 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2주일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모집공고 내용과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청년 세어형 세대는 난방 및 에어컨 사용시 난방, 전기요금이 실별로 고지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다양한 주거서비스(플리마켓 등)를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주거서비스는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외부인 이용가능시설(어린이집, 상가등)이 있어 이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임시주차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를 준용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본 주택은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시행령」제34조의2(임대료)를 준용하여「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임대조건 상승률로 적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본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계약 시 임차인에게 별도의 용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목업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 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 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 주변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의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홍보운영관, 홈페이지, 팸플렛,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고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 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주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제영향평가(환경, 재해, 학교(교육)등) 협의내용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면적, 획지, 형상 등) 및 지구내 다른 토지의 용도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이점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단신도시 남동측에 김포공항이 위치하며,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운항내용(종류, 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또는 법률개정이나 행정명령, 민원, 공사중지 처분(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 원자재파동, 문화재발굴, 전염병의 유행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분양 홍보물(CG 등 이미지)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지, 하천,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학교 등은 현

		<p>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단신도시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하천, 학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은 입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관련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p>단지주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빛공해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근 단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교통장애 발생 및 주거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 공원, 하천 등 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사면처리,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높이 및 옹벽 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주변도로간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 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여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사생활침해 및 빛공해 등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북측에는 왕복 4차로의 검단로, 완충녹지 계획 / 단지 동측 공동주택 부지 계획 / 단지 서측 검단신도시17호근린공원 / 단지 남측 공동주택 부지 계획 /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 먼지, 눈부심, 교통혼잡,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유해시설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부지 소음측정 및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사양, 형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학교 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통학구역 내 배치 가능 중학생: (가칭)검단3중, (가칭)검단5중 신설을 통한 학교군 내 배치 가능 고등학생: (가칭)검단3고, (가칭)검삼고 신설을 통한 학교군 내 배치 가능 <p>※ 사업지 인근의 공동주택 분양 일정 및 검단구 학교 신설 여부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사용검사 등)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p>
<p>단지 내·외부 유의사항</p>	<p>단지계획</p>	<p>[단지배치 및 지상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3층 외벽, 지상주차장 단차부 외벽은 석재쌓칠(도장)로 마감됩니다. (동출입구 및 일부동 측벽, 부대시설, 문주 등은 석재로 마감됩니다.) 단지 내 조경디자인은 특화설계에 따라 홈페이지 안내자료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과 차량차단기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는 입주민 및 인근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실의기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므로 인근세대는 시야차단,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청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보행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에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또는 추가설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시설, 어린이·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및 보관장소는 수집운반차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피해 및 사생활 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일부동)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관리업체의 입주규정에 따라 사다리차가 이용 가능한 동이더라도 엘리베이터 이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및 문주,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일부동(5801동, 5802동, 5806동, 5809동) 최상층 지붕 및 옥탑층 및 헬룸#4, 헬룸#6, 헬룸#9)에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실 시공시 설치 위치는 이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 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설치위치 : 5808동 아파트 지붕층 - 중계장치 설치위치 : 5801동, 5802동, 5806동, 5809동 아파트 지붕층에 설치되며, 지하2층 헬룸#4, 헬룸#6, 헬룸#9 통신중계기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등이 돌출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동별 소방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및 후면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근 공항과 인접된 여건으로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포함) 설치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조망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동의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대지의 기부채납 및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행로, 신호등, 도로, 볼라드, 점자블록, 표지판, 버스승강장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포함함.)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이용료 또는 점용료,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제3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무상 사용 승낙의 간주), 필요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 검단신도시의 당 단지의 지정동호수는 58호이며 추후(5801동,5802동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되어 있는 동호수는 추후 인천검단신도시의 지정동호수로 변경 예정입니다. • 당 사업지 5803동 동측으로 저류지 및 공공공지(LH공사분)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중력식옹벽이 시공될 예정으로, 해당구간 단지내 보도와 외부보도의 단차가 발생하여 외부로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출입구 진입 시 별도의 회전차선이 없으며, 통학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회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단지내에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용과 혼용이 불가합니다. 혼합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및 관리비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주차장	<p>[지하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웬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지하 1,194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14대, 총 1,208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 제연환풍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2개층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및 차로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 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환풍등이 노출로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 입주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건축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환풍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인근세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801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종합선진교육센터)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실외기 가동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인근세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할 수 없고,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은 지하1층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1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5801동, 5802동, 5803동은 지하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기차 충전 시 이동거리가 증가해 불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고,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이 5804동~5809동 지하1층에 배치되어 있어, 해당동 입주민들은 주차구역이 부족할 경우 지하2층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급속충전기 2대, 완속충전기 10대, 과금형콘센트식 36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 등에 따른 충전방해 민원발생 시 관계법령 및 입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민원 해결을 해야하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주동마다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상부 및 램프 벽면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경비실 2개소, 방재실, MDF실, 용역원실(남,여 각 1개소), 맘스스테이션 1개소, 주민공동시설(수영장,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샤워실(남,여 각 1개소), 탈의실(남,여 각 1개소),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분양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 집기의 재질, 디자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CG, 단위세대 아이소, 부대시설 이미지, 마감, 시설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포함)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대표 및 입주자대표 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관리사무소, 용역원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지하층에 설치되며, 일부 시설은 환기 및 채광창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임대운영사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대운영회사와 입주자가 함께 유지, 관리,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의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분진,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 개소,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본 공사 시 변동 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은 남측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11개호실), 5801동 하부에 종합선진교육센터, 5801동과 5802동 사이에 스스로 학습센터, 서측 부출입구에 U-SPACE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임대운영회사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801동 남측 근린생활시설은 주변 보차도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유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벽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9B-1, B-2 타입은 분리형세대로 실외기실을 69B-1타입에 공동으로 설치되어 사용합니다. 청약전 이를 인지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인해 일부 타입(69A, 69B)은 실외기실 도어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69B타입은 세대구분형 세대로서 대피용 피난문을 임의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문 앞에 물건 또는 가구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화재발생시 잠금장치가 풀려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9B타입 세대구분형 세대는 소방점검 시 잠금장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풀릴 경우 세대 동의 없이 무단출입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9B(세대 분리형)타입은 구조상 세대 간의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세대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별도 설치되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홈페이지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습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폭, 높이, 용량(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도어(목문)에는 손끼임 방지 보호대가 전면 및 후면에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욕실 및 다용도실의 마감두께는 원활한 배수 등을 위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일부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단위세대 환관 및 펜트리(일부)에는 미설치 됩니다. • 욕실 난방은 각 실 난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에 비교적 온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화장실 환은 외부 환경에 따라 풍량이 조절되어 세대 간 화장실 환소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마감은 마루가 시공되지 않으며, 먼지방지 페인트로 시공됩니다. • 실 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배관은 당해층 배관이 아닌 아래층 욕실 천장 속 노출배관으로 시공되어 있어 상층세대 물 사용 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동별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측면 또는 위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부분의 상부장은 깊이나 높이 또는 폭이 다를 수 있으며, 노출 부위 커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쿠팡 연결을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 경로상에는 주방가구 하부장에 타공이 되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중 일부는 이동식이 아닌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거실벽면 일부 경량벽체에 과도한 크기의 TV를 설치할 경우 별도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파손 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천장 등의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불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 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층세대에서 물 사용 시 욕실상부 배관으로 통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되며, 각 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세대분전함의 경우 가구 및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불가함으로 복도, 침실, 거실 등 노출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주방상판 등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실 시공 시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 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현관 천장에 설치되는 차압측정공은 일부 세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창나뉘기,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 부 일부 석재마감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홍보물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사용에 필요한 이상의 힘을 가했을 경우 마감자재(외부 창호, 가구, 목창호, 각종 마감판 등)의 흔들림, 벌어짐 및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소방법상 항상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에서는 말발굽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벽 도배는 도배 시공구간의 면적과 피착면에 따라 적용공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시공구간이 넓은 구간은 봉투바름 공법을 적용하여 도배지가 벽과 들떠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 문틀, 몰딩을 고정시키기 위한 타카핀 자국은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대기전력 콘센트가 적용된 경우 대기상태에서는 세팅에 따라 전원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센서등은 주간에 햇빛이 비치는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은 줄눈이 없는 OPEN 줄눈(무메지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타일 규격에 따른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욕실 벽타일 포함) 뒷면 전체를 몰탈로 채우지 않고 벽면에 부착하는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들떠있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 시에는 판매점이나 전문업체와 상담 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 대피공간은 방화구획으로 인해 문 닫힐 시 공기압력이 발생하여 개폐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냉장고 자리 스티커 시공은 정수기 공배관이 매립된 것으로 급수관을 싱크대 수전에서부터 냉장고까지 연결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 주방 발코니에 2단 건조기 설치할 경우에는 제품 치수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 조망은 건물 구조상 벽면에 의해 완전히 가려질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인접 세대와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근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단의 제질로 인하여 빛공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난방 구조는 지역난방으로 시공됩니다.
--	--	--

	기계전기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세대에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세면기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비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공용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홀 지하2층~1층 벽체마감은 도장마감으로 처리됩니다. (타일 미적용)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FIX창 일부는 화재시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주동의 형태 및 공용홀의 계획에 따라 세대간의 형평성(엘리베이터홀에서 세대출입문까지의 거리, 창호 설치 유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 민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공급되는 각종 설비배관(가스 등)이 공용홀, 계단실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의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금(연체발생 시 연체료 포함)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맘&키즈라운지, 작은도서관&입주민카페,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지하1층 주 통로 2.7m / 지하2층 주통로 2.7m
-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 높이 : 지하1층 2.7m / 지하2층 : 2.7m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동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내진 I 등급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지역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인천검단지구 AB21-2BL 민간임대주택
2. 신 장 자: 제일건설㈜
3.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89-16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수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을 차단성능	★★★★
2. 중량층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음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양사 질성토양 최소화	★★★★
4. 필드와 간접발치 대지의 파달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적용	★★★★
9. 교통수 보충을 위한 주차공간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제품(EPP)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장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제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친화 녹지	★
22. 생태면역률	★
23. 비오염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차도로정차지 설치 수준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 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간접환기의 통풍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흡사트릭의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아.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설비	★
4. 수동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배경지 120g/㎡)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인천검단지구 AB21-2BL 민간임대주택
건 주 제일건설㈜
준공(예정)일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89-16 일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25층 / 918세대

면 적 123,838.6585㎡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2-0660-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2.6.20.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수등급(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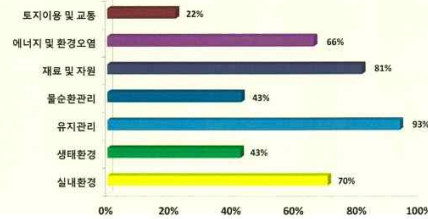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2022년 6월 2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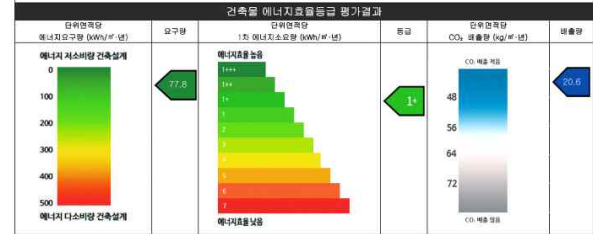
* 인증마크를 반드시 건축물용 공표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서구 AB21-2BL 민간임대주택	인증번호 : 22-주-제-14-0058
준공연도 : 2024(09/01)	평가자 : 신주영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89-16 일원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123838.6585㎡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난방	0.0	0.0	0.0	0.0
냉방	34.5	44.9	35.0	7.7
급탕	30.7	37.7	27.7	6.2
조명	12.6	11.2	30.8	5.3
환기		3.0	6.1	1.4
합계	77.8	95.8	101.6	20.6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재화,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2022년 06월 03일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별도)

구분	주택건설공사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호	(주)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자람앤수엔지니어링	(주)수양엔지니어링
금액	2,159,112,000	748,225,528	775,113,637	174,000,000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자산관리회사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제일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래이트 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05호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110111-8897576	110111-1258220	135811-0093658

■ 청약관련 문의 및 홍보운영관 위치 안내

홍보운영관 약도	분 양 안 내
 <p>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 216 (메트로시티2차 216호 ~ 220호)</p>	<p>■ 홍보운영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1006-13 (메트로시티2차, 2층)</p> <p>■ 사 업 지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489-16 (검단신도시 AB21-2BL)</p> <p>■ 홈페이지 : www.jeil-gd6.co.kr</p> <p>■ 분양문의 : 1522-1014</p> <p>※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p> <p>※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홈페이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임차인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과 상이한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르기로 합니다.</p>